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12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김병주·김남국·김민철

신현영 · 오기형 · 오영환

이용우 • 이원택 • 임오경

임호선 · 장경태 · 장철민

정청래 • 주철현 • 최혜영

한준호 · 홍성국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25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제2항 중 "감안"을 "고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상비병력 규모의 조정) ①	제25조(상비병력 규모의 조정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	②
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	
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	
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,	
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	
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<u>감안</u>	고려
하여야 하고, 이를 매 3년 단위	
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	
다.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